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 발의연월일: 2024. 06. 05.

발 의 자: 강준현 · 권칠승 · 김한규

장경태 · 박범계 · 이정문

문정복 • 서영석 • 유동수

문진석 • 이재정 • 강훈식

위성곤 • 이재관 • 복기왕

허종식 • 조정식 • 송재봉

박정현 • 박수현 • 어기구

백혜련 • 박용갑 • 황명선

임호선 · 조승래 · 황정아

의원(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도 증가 함에 따라 사법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광역시까지 왕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세종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

별표 2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		대전광역시・금산군
	홍성	보령시・홍성군・예산군・금산군
	공주	공주시・청양군
	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산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천안	천안시 • 아산시

별표 3의 대전고등법원란의 대전지방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종 세종특별자	치시
----------	----

별표 7 중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특별자치시 · 군법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세종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세종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